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The Economic Well-Being of Retired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인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성 영 애

Dept. of Home Management, Inchon Univ.
Instructor : Young-Ae Su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결과분석 및 논의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well-being of households whose heads were retired in 1989, utilizing the combined income and net worth measure of economic well-being which was adjusted for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The data came from the 1989 Survey of Consumer Finances. The results showed that (1) the economic well-being of retired households was 87% of the average economic well-being of total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2) there we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well-being among retired households, and (3) race, sex, age of head had significant direct and/or indirect effects on the economic well-being of retired households. Education and income of longest job were significant intervening variables, whereas the duration of longest job was not.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made.

I.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정책수립가 및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결과 지난 수십년간 미국정부의 사회보장혜택은 확대되었으며 따라서 노인가계의 경제적 지위

는 지속적인 향상을 보여왔다. 몇몇 연구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지위가 오히려 비노인가계의 지위보다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Crystal & Shea, 1990). 그러나 노인가계들간에도 경제적 지위상 심각한 격차가 있고, 그중 가구주의 취업지위는 근로소득유무와 관련되어 노인가계의 경제적 지위에 영

향을 줄 수 있다(Schulz, 1988 ; Grad, 1990). 이는 노인가계중에서도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인 은퇴가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함을 시사한다.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기대여명의 상승, 평균 은퇴연령의 감소 및 조기은퇴율의 증가 등(U. S. Bureau of the Census, 1989 ; Packard & Reno, 1989)으로 인한 은퇴가계의 지속적인 증가예측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증가시켜준다. 또한 이러한 인구의 동향의 결과로서 평균 가계가 은퇴후 보내는 시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의 은퇴에 대비한 경제적 노력의 중요성도 높아진다. 이때 은퇴가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더불어 앞으로 은퇴기를 맞을 가계에 대한 시사점은 현재의 은퇴가계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상황을 알아봄으로써 효과적으로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은퇴가계를 단지 연령만을 고려한 노인가계와 동일하게 정의, 연구함으로써 은퇴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는 노인가계를 다룬 연구에서 취업지위를 하나의 변수로서만 연구하여 은퇴가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자세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었다. 또한 이들 연구는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계의 소득만을 주로 고려하고, 가계의 자산, 부채 또는 가계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을 무시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인가계연구에 입각해 볼때, 은퇴가계내에서도 경제적 복지간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이라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은퇴가계를 가구주의 취업지위를 고려하여 연령만을 고려한 노인가계와는 다르게 정의하고 (2) 가계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부채 및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여 (3) 미국 평균가계와 비교하여 은퇴가계의 상대적인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하며, 또한 은퇴가계내에서의 경제적 복지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인과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4) 은퇴가계 및 은퇴를 대비한 가계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2.1. 은퇴의 정의 및 은퇴가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Schulz(1988)는 노인의 경제적 지위는 은퇴를 통해 심각한 영향을 받지만 이제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데, 그 이유로서 은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개념적,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은퇴에 대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중 연령(보통 65세) 및 연금 또는 사회보장의 수혜여부(이도 보통 연령과 밀접히 관련, 65세 또는 62세)가 은퇴의 조작적 정의로 가장 빈번히 이용되어 왔다(Clark et al., 1978). 그러나, 이 두 정의는 모두 개인의 취업여부는 무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가계”는 “노인가계”와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고, 은퇴가계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도 노인가계연구결과에서 추론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은퇴는 분명 노동시장 또는 취업여부와 관련된 개념이며(Hurd, 1990), 노인이 반드시 은퇴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노년기의 경제활동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노인인구를 은퇴인구와 동일시함은 은퇴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Ross et al., 1987).

그러나, Hurd(1990)에 따르면, 취업여부와 더불어 연령 또한 은퇴의 정의에 내포되어져야 한다. 연령이 낮으면 재취업율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은퇴로 보기 보다는 실업의 측면이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연령이 높을 수록 재취업의 확률이 낮아지며(Berkovec, 1988), 최근 조기퇴직이 증가함을 고려하여, Packard & Reno(1989)와 Kennickell & Shack-Marquez(1992)은 55세를 은퇴와 실업을 갈라주는 연령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에 근거하여, 은퇴가계를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이며 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계로 정의하였다.

2.2.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측정법

가계소득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가계소득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수집이 용이하고 의미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이다(Palmer et al., 1980).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측정법으로서의 가계소득 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첫째, 가계소득은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하나일 뿐이다. 가계의 자산은 가계-특히 은퇴이후 가계의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이는 가계는 은퇴후의 소비를 위해 자산축적행동을 보인다는 생애주기가설이 오랫동안 주창했던 바이다(Ando & Modigliani, 1963). 둘째, 가계소득이용은 가계내에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소비수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almer et al., 1988). 같은 소득수준을 갖더라도 가구원수나 가구구성에 따른 기본소비수준이 다르다면 두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도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가계의 기본적 소비요구량을 조정하기 위해 일인당 가계소득을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서로 다른 크기의 가계간에 보여지는 규모의 경제나 가계내의 전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Danziger et al., 1984). 이에 규모의 경제나 가계내의 전문화를 고려하기 위해, 가구원수뿐만 아니라 가구원의 연령 또는 자녀수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가계특성을 갖는 가계간의 상대적 화폐필요량을 나타내는 소비등가척도(equivalent scale)를 계산하여, 이를 이용, 가계소득을 조정하는 방법이 더 우월하게 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비등가척도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가계들의 최저생계비를 지정해놓은 빈곤선에 내재되어 있다(Radner, 1987). 즉, 특정 특성을 갖는 기준가계를 정하여 그 가계의 빈곤선으로 각 가계의 빈곤선에 대하여 나누어줌으로써 가계간의 상대적인 필요소비량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소비등가척도이다.

한편,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채는 가계의 복지 수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은퇴가계를 포함, 노인가계의 자산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비노인가계 및 과거에 비해 크기 때문에(Upp, 1983; Torrey & Tauber, 1989; Radner, 1989), 이들을 다루는 연구에서 자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적 지위를 왜곡시킬 수 있다. 부채보유량은 반대의 효과를 지닐 것이다. 따라서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인 순자산을 경제복지의 측정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가계소득과 순자산을 따로 보면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의 복지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가계소득에 근거하여 노인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비노인가계와 비교한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낮은 편임이 나타나고 있다(Radner, 1987). 반면, 노인가계의 순자산수준으로 경제지위를 측정했을 경우는 그들의 경제적지위가 비노인가계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adner, 1989).

이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과 순자산을 결합시키는 방법이 더 타당함을 시사해 준다. 가계소득과 순자산을 결합시키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Radner, 1989, 1990), 첫째, 앞으로 남은 생애동안 들어올 가계소득을 저량으로 계산하여 현재의 순자산에 더해 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순자산의 저량을 연금화 방법을 이용, 유량으로 계산하여 비재산소득에 더해 주는 것이다. 이때, 재산소득은 이미 연금화 계산과정에서 이자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가계소득분에서 제외게 된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생애주기가설에 근거한 것으로, 가계는 생애에 걸쳐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데 그 출발점을 둔다. 이 방법은 Murray(1964)에 의해 개발되어 Weisbrod & Hansen(1968), Taussig(1973), Moon(1977), Radner(1990), Crystal & Shea(1990) 등에 의해 이용되어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앞서 밝혔듯이 노인가계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일반적인 복지수준을 연구하는데 그 목

직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서는 그 관계를 고려한 경우에도 단순관계고찰에 목적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다.

2.3.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회복지정책 및 정책은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격차에 대한 결과에 의존한다. 주로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된 그들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인구통계학적 변수로서 가구주의 인종, 성별, 연령 등에 영향받을 수 있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여성인 가계보다 노년기의 경제적 지위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g. Duncan 1984; Radner 1987; Packard & Reno 1989). 한편 연령의 경우는,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복지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취업지위를 통제 한 후 연령효과를 본 한 연구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 수록 경제적 지위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어(Ross et al. 1987)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정적인 연령효과를 시사해 주고 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인종, 성별, 연령 등의 영향력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들의 인적자본의 차이, 취업기의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에서의 차이에 기인함을 주장하고 있다(Abbott, 1977; Schulz, 1988; Leon, 1985; Maxwell, 1986).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으로 흑인이 백인보다,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들의 취업경험 및 고용상의 지위도 더 열악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Doeringer & Piore, 1971; Garen, 1988; Groshen, 1990). 이는 제변수들간의 영향력은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명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이론에서는 교육수준이 취업기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득수준을 증가시킴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수준과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다(Becker, 1975).

한편, Abbott(1977)는 취업기간중 가장 오래 근무

했던 직업에서의 경험이 다른 어떤 직업에서의 경험보다 은퇴후의 경제적 지위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중 중요한 요인은 이중시장구조 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이론은 노동시장에서 1차시장과 2차시장을 구성하는 직업군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좋은 직업(good job)과 나쁜 직업(bad job)을 구분해주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좋은 직업은 임금도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며 작업조건이 좋고 승진의 기회가 높다(Doeringer & Piore, 1971). 이 중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이다(Smith, 1976). 또한 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연금이 이 두 요인에 의거하여 계산되고 있어(Snyder, 1986), 취업기간중 가장 오래 근무했던 직업에서의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은퇴후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정확한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들 변수들간의 관계를 명확히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 인용한 몇몇 연구는 이와 비슷한 변수들을 다루고 있기도 하나, 앞서 지적했듯이 은퇴가계의 정의 또는 경제적 복지의 측정방법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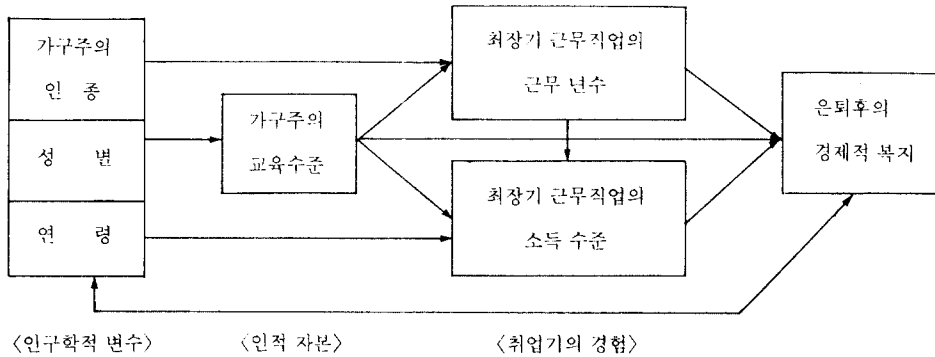
3.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연구문제 1 - 평균가계와 비교하여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때, 가계의 순자산 및 요구소비수준에 대한 조정은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측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문제 2 - 은퇴가계들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 평등한가? 은퇴가계들간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이들 요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3.2. 용어의 정의

은퇴가계 - 가구주가 비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연령이 55세 이상인 가계이다. 이때 가계란 가구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원으로 구성되는 단위를 말하며, 1인가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Kennickell, 1992).

경제적 복지 - Murray(1964)와 Weisbrod & Hansen(1968)의 소득-순자산법으로 계산된 경제자원을 미국 빈곤선에 내재되어 있는 소비등가척도로 조정한 값으로 측정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Wh = \{NPYh + NWh \cdot r / [1 \cdot (1+r)^n]\} / EQFh$$

이때, EWh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 NPYh는 가계의 비재산소득, NWh는 가계의 순자산이다. 비재산소득이란 가계소득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unemployment compensation, alimony, food stamps 등), 연금, 가구주의외의 가구원의 근로소득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순자산은 가계의 자산에서 부채액을 뺀 값으로, 가계의 자산에는 은행잔고,증권, 신탁금,채권,보험,타인에게 빌려준 돈,현금 등을 포함하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동차, 보석, 그림 등의 실

물자산이 포함된다. 부채에는 부동산 관련 부채, 소비자 신용, 타인에게 빌린 부채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 계산법에서는 몇개의 평균값이 요구되는데, r은 실질이자율로 3%가 가정되었다. 이는 Morgan & Duncan(1980)이 장기 시계열 분석 결과 제시한 값이다. n은 기대여명으로서 미국보건성에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제시한 값을 이용하였는데(U.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1992), 부부가계인 경우는 Murray(1964)가 제시한 결합기대여명을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EQFh는 개개 가계의 소비등가척도로서 가구원의 수, 연령, 18세 이전의 자녀수를 고려하여 구해진 빈곤선을 이용하였는데, 1인가계를 기준가계로 설정하여 각 가계의 해당 빈곤선을 1인가계의 빈곤선으로 나누어 준 값이다.

독립변수 - 독립변수로서는 가구주의 인종, 연령, 성별, 교육수준, 고용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와 소득수준이 포함되었다.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은 은퇴년수가 서로 다를 것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 1989년도 불변가격으로 조정하여 비교가 가능하게 하였다. 인종 및 성별은 가변수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는 연속변수이다.

3.3. 자료 및 분석방법

본연구는 1989년 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이용하였다. 이는 미국가계를 대표하는 3,143의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의 자산, 부채 및 소득에 대해 매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최근의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는 누락된 응답에 대해서 그 값을 추정하는 작업이 행해졌는데, 이때 종래에 이용되던 단수추정 방법(single imputation technique) 대신 복수추정 방법(multiple imputation technique)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이용되어 하나의 무응답에 대해서 5개의 값을 대치하였다. 이에 기존의 통계방법을 적용한 후, 하나의 통계처리가 더 요구되었다. 즉, 본연구에서는 연구문제1을 위해 평균 값이, 연구문제2를 위해서는 일련의 회귀분석을 이용하는 경로분석이 이용되었는데, 5개의 자료를 통합하기 위해서 Rubin(1987)이 제시한 통계방법을 이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Rubin(1987)을 참조). 따라서 결과제시에 있어서 기존의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각 회귀계

수의 통계치로 t 값대신 F 값이 제시되고 각각의 자유도가 계산되었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할 경우, 표본편차가 커짐으로써 유의도 $p < .10$ 수준이 이용되었다.

IV. 결과분석 및 논의

4.1. 은퇴가계의 일반적 특성

〈표 1〉에 미국 은퇴가계의 일반적 특성이 제시되었다. 은퇴가계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가계를 포함하는 미국 평균가계의 특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퇴가계가 미국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2%였다. 은퇴가계의 가구주 77%는 백인이었고, 54%가 남성이었는데 이는 평균가계의 비율(69%) 보다 낮은 편이다. 은퇴가계의 평

〈표 1〉 은퇴가계의 일반적 특성 (weighted)*

일반적 특성	평균가계	은퇴가계
unweighted 표본수	3,143	697
예측가계수	93,098,347	22,492,044
(%)	(100.0)	(24.2)
가구주 인종(백인=1)	0.74	0.77
가구주 성별(남자=1)	0.69	0.54
가구주 연령(년)	48.05	72.46
가구주 결혼지위(결혼=1)	0.56	0.42
기대여명(년)	33.32	14.53
교육수준(년)	12.28	10.05
가계규모(명)	2.46	1.54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년)		19.18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 (1989년도 불변가격)		24,506
현재가계소득(달러)	35,793	19,505
자산(달러)	185,504	164,992
부채(달러)	29,587	5,951
순자산(달러)	155,914	159,041

* 이 결과 및 다음에 제시되는 모든 결과는 1989 SCF의 5자료를 결합한 결과임. 이 자료는 자료내에서 제공하는 weight값을 적용함으로써 미국가계를 대표하는 자료가 되므로, 실제 관찰된 표본수와 weight된 가계수는 다르게되며, 이후의 결과는 모두 weighted된 결과이다.

가구원수는 1.54명으로 미국보통가계의 평균가구원수 2.46명보다 적었다. 또한 은퇴가계 가구주의 42%만이 배우자가 있었으며, 그들 평균연령은 72.46세, 평균기대여명은 14.53년이였다. 은퇴가계 가구주의 평균교육수준은 10.05년으로 미국평균가계 가구주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이들이 은퇴전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업에서의 근무년수는 평균 19.18년 이었고,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던 가구주의 비율은 5% 정도였다. 은퇴전 최장기근무직업에서의 평균소득수준은 1989년도 불변가격으로 24,506달러였다. 미국가계의 연간평균소득은 35,793달러였는데, 은퇴가계의 연간가계소득은 평균 19,505달러였다. 이들의 평균자산규모는 164,992달러며, 평균부채규모는 5,951달러로써 평균순자산은 159,041달러였다. 이는 미국평균가계의 순자산과 유사한 수준이다.

4.2. 평균가계대비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

〈표 2〉에서는 가계소득, 순자산 및 요구소비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 미국 평균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과 비교하였다. 또한, 가구원수나 구성에 따른 요구소비수준의 조정 및 순자산의 고려가 경제적 복지수준 측정에 미치는 효과를 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가계소득척도와 가계소득에 대해 단지 요구소비수준만을 조정한 척도를 이용한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2〉 평균가계대비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

경제적 복지측정방법		평균가계	은퇴가계
가 계 소 득	달러 (%)	35,793 (100.00)	19,505 (54.49)
요 구 소 비 수 준 조 정	달러 (%)	25,290 (100.00)	17,441 (68.96)
요 구 소 비 수 준 조 정 소득 - 순자산	달러 (%)	30,185 (100.00)	25,490 (84.45)

결과를 보면, 가계소득에 대한 요구소비수준의 조정은, 평균가계대비 은퇴가계 복지수준을 54.49%에서 68.96%로 높였다. 요구소비수준 및 순자산을 모두 고려한 후에는,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더욱 높게 평가되어 그들의 평균가계대비 복지수준은 84.45%였다. 이는 은퇴가계의 가계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기대여명에 비해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소비수준조정과 순자산의 가계 복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승효과는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만을 고려한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평균가계보다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는데(e.g., Crystal & Shea, 1989),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뿐만 아니라 취업지위를 고려한 결과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평균가계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는 가구주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노인가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은퇴가계에 대해 적용시킨다면,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4.3. 은퇴가계간의 경제적 복지 분배상황

다음으로 은퇴가계들간에 경제적 복지수준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은퇴가계를 경제적 복지수준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최하위 20% 가계가 차지하는 경제적 복지량은 총은퇴가계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복지의 3.52%밖에 안된다. 반면, 최상위 20% 가계가 차지

〈표 3〉 은퇴가계간 경제적 복지의 분포

5 분 위	점 유 율 (%)	평 균 경제적 복지수준(달러)
1분위	3.52	4,518
2분위	7.42	9,354
3분위	12.44	15,832
4분위	19.30	24,596
5분위	57.32	72,927

하는 비율은 57.32%나 된다. 이는 은퇴가계내에서도 경제적 복지에 있어서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4.4.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경로분석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가구주의 인종,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및

소득수준이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경로분석이 행해졌다. <표 4>는 경로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회귀모델의 분석결과이다. 모두 네 개의 회귀모델이 분석되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수의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한 결과가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우선,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는 가구주의 인종,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았

<표 4> 경로모형에 포함된 회귀분석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화된 회귀계수	F 값 ^a	자유도 ^b
가구주 교육수준 R ² =0.10 F=26.152*** (3, ∞) ^c	인종 ^d	0.320	74.283***	(1, ∞)
	성별 ^e	-0.031	0.682	(1, ∞)
	연령	-0.126	11.461***	(1, ∞)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R ² =0.29 F=68.532*** (4, ∞)	인종	0.053	2.247	(1, ∞)
	성별	0.493	218.488***	(1, ∞)
	연령	0.087	6.639***	(1, ∞)
	교육수준	0.185	28.881***	(1, ∞)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 R ² =0.14 F=8.860*** (5,42)	인종	-0.082	0.080	(1,10)
	성별	0.235	23.821***	(1,157)
	연령	0.048	0.588	(1,9)
	교육수준	0.231	10.035**	(1,8)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0.065	1.562	(1,45)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 R ² =0.14 F=7.193*** (6,41)	인종	0.032	0.542	(1,179)
	성별	0.061	0.869	(1,18)
	연령	0.128	5.252**	(1,13)
	교육수준	-0.235	16.076***	(1,14)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0.002	0.004	(1,458)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	0.191	3.968*	(1,6)

a.b. 연구방법론에서도 밝혔듯이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통 이용되는 회귀분석을 한 후 한 단계의 통계 처리가 더 요구되었으므로 F값과 그에 따른 자유도가 구해졌음.

c. 자유도가 1,000보다 클 경우 ∞로 표시하였음.

d. 가구주가 백인=1.

e. 가구주가 남자=1.

*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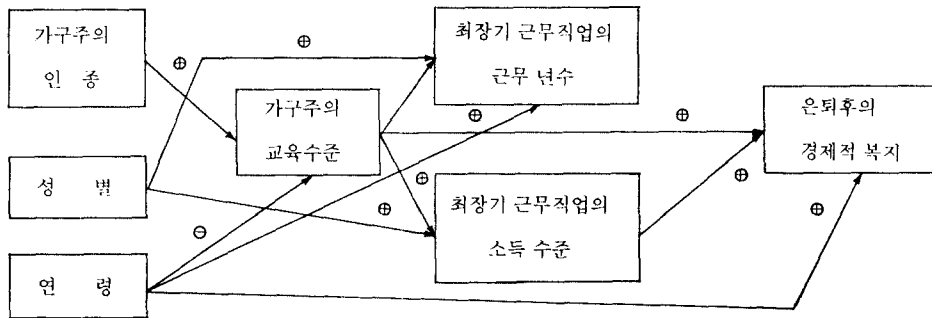
** p<.05

*** p<.01

〈표 5〉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대한 제변수의 영향력분해

독립 변수	총 효과	직접효과	경로별 간접효과		
			교육수준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
인종 ^a	0.120***	0.032	0.090@	0.000	-0.002
성별 ^b	0.103**	0.061	-0.009	0.005	0.046@
연령	0.120*	0.128**	-0.017@	0.001	0.008
교육수준	0.282***	0.236***		0.022	0.024@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0.011	-0.002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	0.191*	0.191*			0.013

- a. 가구주가 백인=1.
- b. 가구주가 남자=1.
- * p<.10
- ** p<.05
- *** p<.01
- @ 유의미한 경로.



〈그림 2〉 경로분석결과도의 도식화

다(총효과).

특히 교육수준은 가장 큰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전 생애에 걸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은 정적인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도 보여주었다. 즉, 취업기의 소득수준은 교육수준에 의해 측정되는 인적자본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적자본이론과 일치하여, 은퇴가구의 교육수준은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소득수준이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간접효과). 교육수준은 또한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직접효과). 이 결과는 Haveman & Wolfe (1984)의 교육은 소득 내지 생산성향상효과 이상의 효과를 가진다는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은 교육수준에 따른 저축성향이라든가 소비효율성향상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또는 교육수준이 배우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배우자의 노동시장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대했던대로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이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은퇴전 소득이 높을 수록 직업관련 은퇴소득의 획득과 자산축적의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직업의 안정성을 측정해주는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는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유의미한 직접 및 간접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이 경로모형에서 유의미한 경로로 작용하였다. 즉, 가구주의 인종, 성별 및 연령이 이들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경로는 각 변수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가구주의 인종이 경제적 복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교육수준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총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백인에 비해서 유색인종의 교육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의 낮은 교육수준이 은퇴후의 낮은 경제적 복지를 가져온 것이다. 또한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최장기근무직업에서의 소득차이도 그들의 교육수준의 차이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백인과 유색인종간의 은퇴후 경제적 복지의 차이는 그들간의 교육수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도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과 총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성별의 매개변수는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이었다. 즉, 근무년수와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보다 소득수준이 낮았고 이 낮은 소득수준이 은퇴후의 경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편, 성별은 교육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국, 은퇴후 남녀간의 경제적 복지차이는 교육수준의 차이이기 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수준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중시장구조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교육수준이 같더라도 높은 소득을 갖는 직업을 갖는데 장애가 많고 이것이 은퇴후에 까지 연장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는 일부 여성들은 가사업무로 인해, 비교적 많은 업무량이 따르는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어

는정도 지지한다. 한편, 단순히 교육년수로 측정할 수는 없는 교육내용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가 미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셋째,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해 가구주의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직접, 간접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 인종, 성별, 교육수준과 최장기근무직업의 근무년수 및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 연령은 정적인 효과를 미쳤다(직접효과). 이 연구 결과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연령효과를 보여주는 대다수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이지만, 노인의 취업지위를 통제한후 연령효과를 본 Ross et al.(198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연령의 정적인 효과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못한 조기은퇴자는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가된 액수를 받는다는 현재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연령의 간접효과는 교육수준을 통해 부적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아 이것이 은퇴후 경제적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간접효과와 정적인 직접효과중 정적인 직접효과가 더 커서 총효과는 정적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미국가계를 대표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 현재 은퇴가계는 전체가계의 약 24%를 구성하고 있었다. 노인인구의 증가 및 은퇴연령의 감소 등으로 은퇴가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그들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미국평균가계의 복지수준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측정에 있어서, 가계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의 순자산 및 그들의 요구소비수준을 고려한 결과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은 향상 평가되어 가계의 순자산의 경제적 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큼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을 고려한 기본적 소비수준의 고려가 경제적 복지측정에 영향을 줌이 드러났다.

한편, 은퇴가계들간의 경제적 복지의 분배상황을 살펴본 결과 은퇴가계들간에도 상당한 불평등이 존

제하였다.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은퇴전에 가장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업의 소득수준이 가구주의 인종, 성별 및 연령의 중요한 매개변수임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인종, 성별, 연령의 매개변수는 서로 달라 인종 및 연령은 교육수준을 통해서, 성별은 최장기근무직업의 소득수준을 통해서 은퇴후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주었다. 이중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 계속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경로분석결과에 입각해 정책적 고려의 우선순위가 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은퇴가계중에서는 백인가계보다는 유색인종의 가계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끄는 가계에, 가구주의 연령이 높은 가계보다는 갓은퇴한 가계에 우선적인 정책적 노력이 주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현재 은퇴에 도달하지 않은 가계가 은퇴후 보다 평등하고 향상된 경제적 복지를 누리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교육수준 향상 및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해소 등에 정책의 방향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가계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은퇴가계의 평균가계대비 경제적 복지수준은 미국은퇴가계의 그것보다는 낮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교육효과나 최장기근무직업에서의 소득수준 등은 은퇴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지를 중요한 변수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모형을 우리나라 가계에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이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은 가계의 소득, 자산, 또는 부채 등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에 따른 후속연구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복지수준을 자료의 수집상 논란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계의 소득 및 순자산, 요구소비수준을 고려하였는데, 가계의 자원측정은 더욱 포괄적일 수 있다. 비화폐소득이 그 예이다. 그러나 비화폐소

득 등은 그 범위와 값을 추정하는데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많아(Radner, 1987), 이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그 추정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또다른 변수들이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가구주의 결혼지위나 결혼경력, 배우자의 특성이 은퇴후 가계의 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주리라 사료된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Abbott, J.,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 Some Black-White Differences, Social Security Bulletin, 40, 1977, 16-42.
- 2) Ando, A., &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53, 1963, 55-84.
- 3) Becker, G., Human Capital(2nd ed.),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5
- 4) Berkovec, J., & Stern, S., Job Exit Behavior of Older Men, Discussion Paper No. 169, Department of Economics, Univ. of Virginia, 1988.
- 5) Clark, R., Kreps, J., & Spengler, J., Economics of Aging :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6, 1978, 919-962.
- 6) Crystal, S., & Shea, D.,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 (3), 1990, 227-247.
- 7) Danziger, S., van der Gaag, J., Smolensky, E., & Taussig, M. K., Economic Status of the Aging, In H. J. Aaron & G. Burtless(Eds.), Retirement and Economic Behavior(pp.175-193), New York :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Inc. 1984.
- 8) Doeringer, P. B., & Piore, M. J., Internal Labou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Mass. : Health, 1971.
- 9) Duncan, G. J., Years of Poverty, Years of Plenty : The Changing Economic Fortunes of American

- Workers and Families, Ann Arbor :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 of Michigan, 1984.
- 10) Garen, J. F., Wage Growth and the Black-White Wage Differential,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Business*, 28(3), 1988, 29-42.
 - 11) Grad, S., Income Changes at Retirement, *Social Security Bulletin*, 53(1), 1990, 2-10.
 - 12) Groshen, E. L., The Structure of the Female/Male Wage Differential : Is It Who You Are, What You Do, or Where You Work?, *Journal of Human Resources*, 26(3), 1990, 457-472.
 - 13) Haveman, R. H., & Wolfe, B. L., Schooling and Economic Well-Being : The Role of Nonmarket Effec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3), 1984, 377-407.
 - 14) Hurd, M. D., Research on the Elderly :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1990, 565-638.
 - 15) Kennickell, A., Description of the First Public Release of the Full 1989 SCF Cross-Section Dataset, Washington D.C.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1992.
 - 16) Kennickell, A. & Shack-Marquez, J., Changes in Family Finances from 1983 to 1989 :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78(1), 1992, 1-18.
 - 17) Leon, J., A Recursive Model of Economic Well-Being in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40(4), 1985, 494-505.
 - 18) Maxwell, N. L., The Effect of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Segments on Retirement Income : A Policy Analysis, *Social Science Quarterly*, 67(1), 1986, 53-68.
 - 19) Moon, M., The Measurement of Economic Welfare : Its Application to the Aged Poor, New York : Academic Press, 1977.
 - 20) Morgan, J. N., & Duncan, G. J., The Economics of Personal Choice, Ann Arbor : The Univ. of Michigan Press, 1980.
 - 21) Murray, J., Potential Income from Assets : Findings of the 1963 Survey of the Aged, *Social Security Bulletin*, 27(12), 1964, 3-11.
 - 22) Packard, M. D., & Reno, V. P., A Look at Very Early Retirees, *Social Security Bulletin*, 52(30), 1989, 16-29.
 - 23) Palmer, J. L., Smeeding, T., & Jencks, C., The Uses and Limits of Income Comparisons, In J. L. Palmer & I. V. Sawhill(Eds.), *The Vulnerable* (pp.9-27), Washington D.C. :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0
 - 24) Radner, D. B., Money Incomes of Aged and Nonaged Family Units, 1967-84, *Social Security Bulletin*, 50(8), 1987, 9-28.
 - 25) Radner, D. B., The Wealth of the Aged and Nonaged, 1984, In R. E. Lipsey & H. S. Tice (Eds.), *The Measurement of Saving, Investment, and Wealth*(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52) (pp.645-684), Chicago : The Univ. of Chicago Press, 1989
 - 26) Radner, D. B., Assess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Aged and Nonaged Using Alternative Income-Wealth Measure, *Social Security Bulletin*, 53(3), 1990, 2-14.
 - 27) Ross, C. M., Danziger, S., & Smolensky, E., Interpreting Changes in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1949-1979, *Contemporary Policy Issues*, 5, 1987, 98-112.
 - 28) Rubin, D. B., *Multiple Imputation for Non-response in Surveys*,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87.
 - 29) Schulz, J., *The Economics of Aging*(4th ed.), Mass. : Auburn House Publishing Company, 1988.
 - 30) Smith, D., *The Dual Labour Market Theory : A Canadian Perspective*, Research and Current Issue Series No.32, Industrial Relations Centre,, Queen's University at Kingston, Canada, 1976
 - 31) Snyder, D. C., *Pension Status of Recently Retired*

- Workers on Their Longest Job : Findings from the New Beneficiary Survey, Social Security Bulletin, 49(8), 1986. 5-21.
- 32) Taussig, M. K., Alternative Measures of the Distribution of Economic Welfare, New Jersey : Princeton Univ., 1973.
- 33) Torrey, B. R., & Tauber, C. M., The Importance of Asset Income Among the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2(4), 1989, 443-450.
- 34) Upp, M., Relative Importance of Various Income Sources of the Aged, 1980, Social Security Bulletin, 46(1), 1983, 3-10.
- 35) U.S. Bureau of the Census, Population Profile of the United States: 1989,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9.
- 36) U.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Vit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1989 : Life Tables,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 37) Weisbrod, B. A., & Hansen, W. L., An Income-Net Worth Approach to Measuring Economic Welfare, American Economic Review, 8, 1968, 1315-1329.